토론회 자료집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을 덮다!"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ROGRAM

좌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10:00-10:10 인사 말씀 - 김삼화 국회의원
- 정춘숙 국회의원

10:10-10:20 (10분) 영상 상영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국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실태를 다룬 영상물)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10:20-11:00 (40분) 농업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11

11:00-11:10 휴식

11:10-11:50 (각 10분) 토론 1 | 농업 이주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김선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실 사무관) 43

토론 2 |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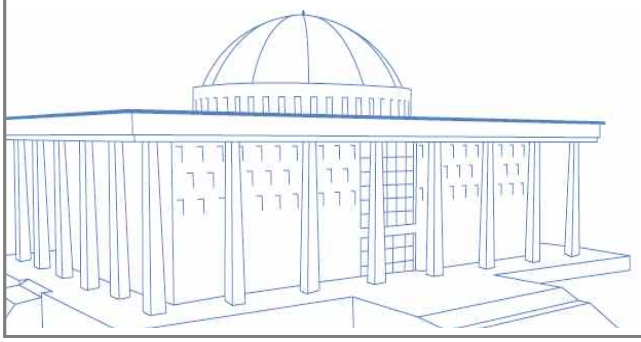
토론 3 | 농업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경험자 지원 사례
-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51

토론 4 | 농업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함의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59

11:50-12:30 종합토론

인 사 말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인사말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2016년이 저물어가는 오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전 대법관님이신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님, 발표를 하시는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님, 김정혜 고려대 연구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강성의 센터장, 김현미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부족하고,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6년 10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자 중 여성은 33.7%를 차지하는데, 그 중 4.6%가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 수가 결코 적지 않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겪는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젠더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업이주여성노동자들은 농촌지역 특성상 노동환경이 열악함은 물론이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을 잘 모르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동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주여성농업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이주여성의 인권과 성폭력 관련 국내외 법제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이자 농업노동자라는 이중 취약성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겪었을 고통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며, 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보장하는 등 국가차원의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태조사 발표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인권, 성폭력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공감에서 준비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가 및 '공감'의 변호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에는 85만 명의 이주여성들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은 '이주민'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장시간이고 휴일도 거의 없으며, 숙소까지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생활 거의 모든 부분이 고용주의 관리감독 아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무환경 가운데 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고용주·관리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이주민이자 피고용인으로서의 이중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68.2%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

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경우가 47.4%로 절반에 가까웠고, 실직 우려, 수치심,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 부족, 보복 우려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농업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에서 성범죄 노출 위험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저는 국회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며, 국정감사에서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주여성이 마음 놓고 성·가정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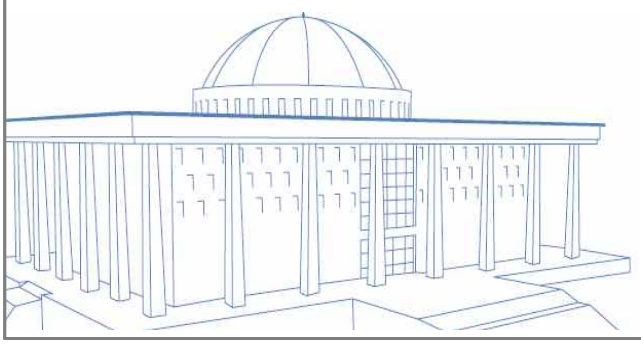
앞으로 저는 여성인권 신장운동을 해왔던 지난 2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기본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법과 제도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아주실 강릉원주대학 김지혜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정혜 교수님, 열띤 토론을 맡아주실 고용노동부 김선재 사무관님, 여성가족부 최창행 과장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강성의 센터장님,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공감의 전수안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 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2016.12.14.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을 낳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연구 배경 및 방법

II. 노동 및 주거환경
III. 성폭력 경험 분석
IV. 제도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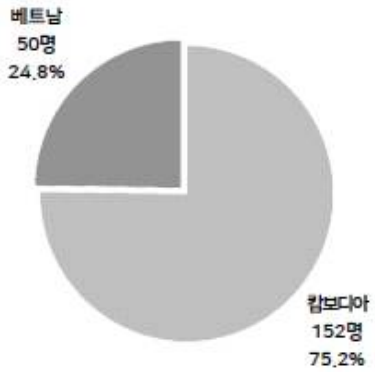
연구 배경

- 농업분야의 여성이주노동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 중 여성 33.7%, 그 중 4.6%가 농림어업 분야
  - 농림어업 분야에서 30.6%(1만 5천 여명)가 여성

- 농업이주노동 환경의 특수성과 취약성
  - 농업분야의 취약한 노동보호
  - 주거환경의 위생과 안전 문제
  - 고립된 지역, 감독의 어려움
  -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 등

⇒ 이주여성노동자를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

설문조사



응답자 총 2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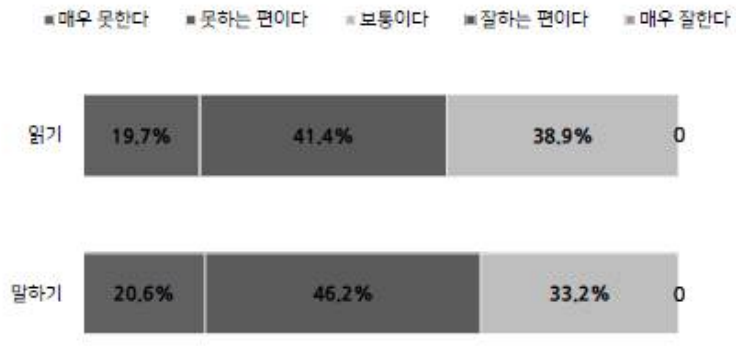
-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조사원 16명
- 2016. 6. - 9. 중순까지 조사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조사 실시
- 총 206부 수거, 농업 근무 기간 1개월 미만 1부, 농업노동자가 아닌 3부 제외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나이	20~24세	61 (30.2)
	25~29세	68 (33.7)
	30~34세	37 (18.3)
	35~39세	15 (7.4)
	40세 이상	21 (10.4)
거주지역	서울	4 (2.0)
	대구	43 (21.3)
	경기	90 (44.6)
	충북	1 (0.5)
	충남	2 (1.0)
	전북	13 (6.4)
	전남	23 (11.4)
	경북	14 (6.9)
	경남	12 (5.9)

체류자격	E-9 (비전문취업)	169 (84.5)
	F-1 (방문동거)	20 (10.0)
	F-2 (거주)	1 (0.5)
	F-5 (영주)	2 (1.0)
	F-6 (결혼이민)	4 (2.0)
	미등록 상태	4 (2.0)
한국 총 거주기간	6개월 이하	23 (11.5)
	6개월 초과~ 1년	26 (13.0)
	1년 초과 ~ 2년	48 (24.0)
	2년 초과 ~ 3년	38 (19.0)
	3년 초과	65 (32.5)

설문조사 응답자의 한국어능력 자기보고



심층면접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5명
  - 비전문취업(E-9) 농업분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1명은 미등록)
  - 성폭력 가해자가 모두 고용주
  - 입국연도는 2012년(1명), 2014년(1명), 2016년(3명)
  - 연구자가 통역인의 도움으로 면접을 진행, 녹취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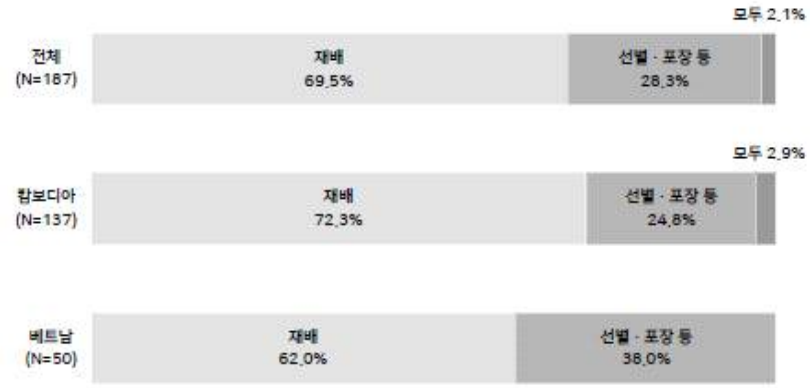
- 활동가 3명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과 관련 사례 수집
  - 캄보디아인과 네팔인 총 4명의 피해 사건 보고
  -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하고 녹취 후 분석함.

I. 연구 배경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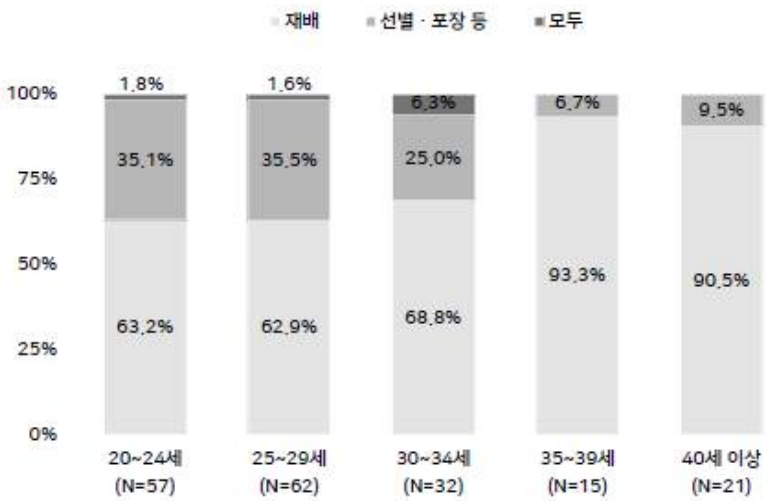
II. 노동 및 주거환경

III. 성폭력 경험 분석
IV. 제도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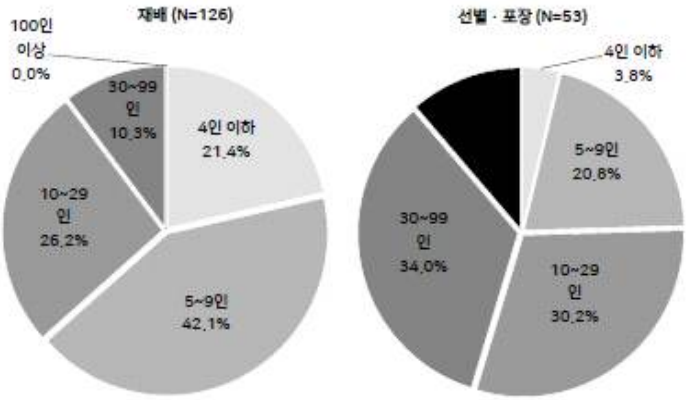
농업업종



연령별 노동업종



사업장 규모


재배 (N=126)
100인 이상 0.0%
30~99인 10.3%
4인 이하 21.4%
10~29인 26.2%
5~9인 42.1%
선별 · 포장 (N=53)
4인 이하 3.8%
5~9인 20.8%
30~99인 34.0%
10~29인 30.2%

근무기간


6개월이하
6개월초과~1년
1년초과~2년
2년초과~3년
3년 초과
(%)
농업분야 총 종사기간 (N=195)
13.8
17.4
22.1
21.0
25.6
현 농장 근무기간 (N=196)
23.5
26.0
19.9
22.4
8.2

하루평균노동시간



월 휴가 일수



월평균 소득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조건

50.0%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
농산물 재배 분야 65.9%
전체 평균 9.5시간(최소 8시간, 최대 14시간)

57.2% 휴일 일수가 2일 이내
농산물 재배 분야 76.8%
전체 월평균 2.8일(최소 0일, 최대 8일)

52.5% 월 평균 소득 130만원 이하
농산물 재배 분야 59.2%
전체 평균 130.2만원(최소 80만원, 최대 190만원)

저임금,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농장에는 일이 없을 때 사장님이 2주 되면 하루 쉬게 해주는데 만약에 일이 많이 있으면 저는 못 쉬어요. (중략) 다른 농장에서 일이 바쁘면 사장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다른 농장[하우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쉬는 날이었는데 사장님이 '너희들이 꼭 가야 한다'고. (중략) 저는 쉬는 날이니까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우리 방에 와서 문을 열라고 했어요. (사례1)
- 점심시간에 빨리 먹지 못 하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중략)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은 1시간까지 안 됐고 30분밖에 못 쉬었어요. (사례2)
- 제가 월급을 120만원 받았는데 아플 때 월급을 5만원 정도 공제했어요. 월급 120만원인데 5만원을 뺐어요. (중략) 농장에 일이 없을 때도 5만원을 공제했어요. 다른 농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 4만원만 공제하는데요. (사례2)
- (어떤 농장 가고 싶어요?) 특히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월급은 많이 안 줘도 되고 최저임금부터만 계약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례4)

강도 높은 노동, 폭언과 폭행, 신분증 강제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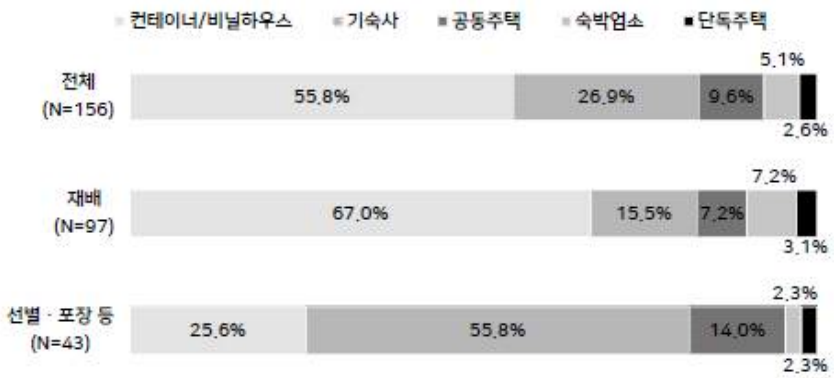
- 농장에서 일이 너무 힘들고 우리는 여자인데 농장에는 일들이 다 남자 일이고, 우리는 여자인데 비료 25kg 들고 차 위에 올려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화를 내면서 제 몸을 끌고 가서 그때 저는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사례5)

- 사장님이 제 여권을 2주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저 보고 여권이 있어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주일이 지나가도 사장님이 제 여권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사장님 보고 "외국인등록증을 빨리 발급 안 해줄 거면 일단 제 여권을 주세요" 라고 계속 부탁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여권을 저를 줬어요. (사례4)

숙소 제공자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본인이나 가족의 집	기타(쉼터)
전체 (N=201)		80.6%	11.4%	8.0%
농업업종	재배	76.7%	12.4%	10.9%
	선별 · 포장 등	84.9%	13.2%	1.9%
	재배+선별 · 포장 등	75.0%	0.0%	25.0%
	전체 (N=186)	79.0%	12.4%	8.6%
체류자격	E-9 (비전문취업)	88.2%	2.4%	9.5%
	F-1 (방문동거)	40.0%	60.0%	0.0%
	F-2 (거주)	0.0%	100.0%	0.0%
	F-5 (영주)	0.0%	100.0%	0.0%
	F-6 (결혼이민)	25.0%	75.0%	0.0%
	미등록 상태	50.0%	50.0%	0.0%
	전체 (N=199)	80.4%	11.6%	8.0%

고용주가 제공한 주거형태



체류자격별 주거형태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소	합계
E-9 (비전문취업) N=143	55.9%	2.1%	9.1%	27.3%	5.6%	100.0%
F-1 (방문동거) N=8	75.0%	12.5%	-	12.5%	-	100.0%
F-6 (결혼이민) N=1	-	-	-	100.0%	-	100.0%
미등록 상태 N=2	50.0%	-	-	50.0%	-	100.0%

숙소의 위치, 구조, 위생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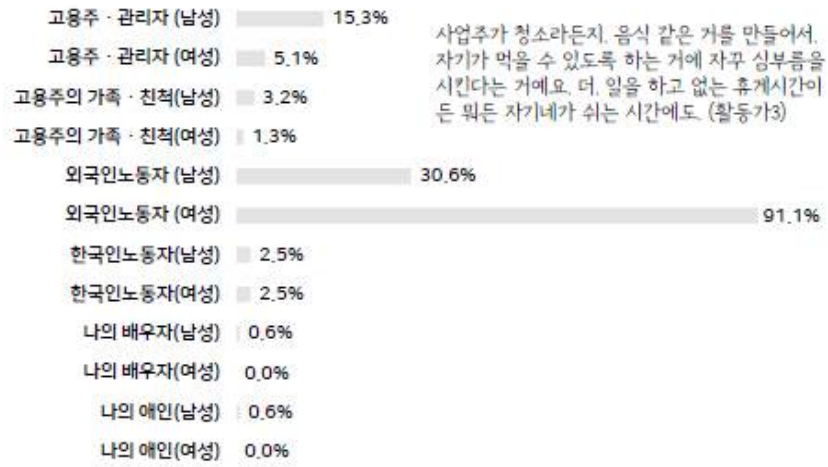
[숙소] 옆에 다른 컨테이너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중략) 밤에 너무 무서워요. 그 쪽에는 낮에도 조용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사례4)

제가 여기서 자고 머리 위에는 문 옆에 있고 다리는 부엌[싱크대] 쪽에 있어요. (그럼 둘이 자면 꽉 차는 정도?) 네. 너무 좁아요. (사례5)

제가 시장에 가서 고기 사오면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왜냐면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사례5)

주거시설도 아닌 곳에 임시 숙소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숙소 제공했다고 하고. 거기에 또 자기네 무슨 뭐 수도료. 무슨 전기세 뭐 이런 거랑 또 그거 숙소 제공 한 비용이랑 해서 뭐 30만원 그렇게 막 떼거든요. (활동가3)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동거인 (N=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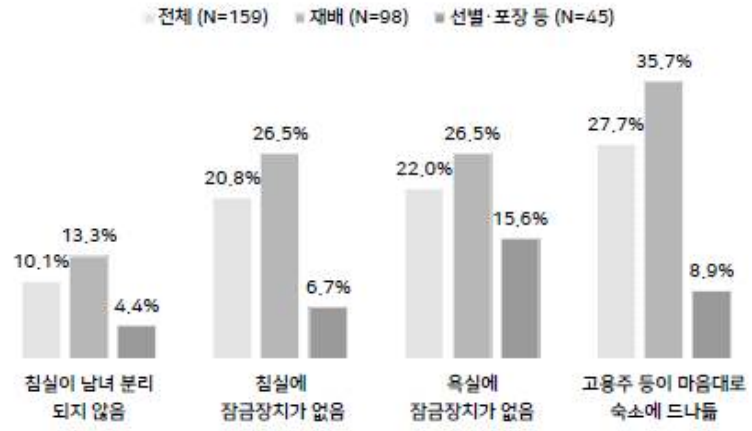


사업주가 청소라든지, 음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자꾸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에요. 더, 일을 하고 없는 휴게시간이든 뭐든 자기네가 쉬는 시간에도. (활동가3)

개인 방(침실)의 동거인

	전체 N=154	재배 N=94	선별 · 포장 등 N=44
혼자 사용	20.8%	24.5%	18.2%
애인이나 가족	1.9%	2.1%	2.3%
여성(들)	75.3%	70.2%	79.5%
여성(들)과 남성(들)	1.9%	3.2%	0.0%
전체	100.0%	100.0%	100.0%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안전 문제



화장실, 샤워실, 방

- 화장실에 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사업장 변경하고 싶어요. 월급이 많아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사례2)
-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컨테이너 옆에 있는데 화장실은 커튼만 있어요. (사례3)
- 몰래 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저는 샤워할 때 사모님이 열고 봤어요. (샤워할 때 어떻게 해요?) 커튼 닫아요. (사례2)
- (방문을 잠글 수 있나요?) 아니요. 잠글 수 없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문을 부쉈으니까요. (사례1)
- 방을 잠가도 사장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러 갈 때 문을 잠갔는데 사장님한테 열쇠가 있어서 사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중략) 그래서 그 때부터 안 잠갔어요. (사례2)
- 옷을 갈아입을 때 사장님이 문 앞에 서서 쳐다보고, 노크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밥을 먹을 때, 잘 때도. (중략) 옷을 갈아입을 때 한 사람이 주변을 살펴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장님이 와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마음대로 문을 그냥 여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왔을 때 사장님의 행동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례2)
- 일이 끝나면 몸에서 냄새 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제 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사례5)

노동 및 주거환경에 관한 소결

- 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 폭언과 폭행, 신분증 강제보관 등
- 숙소가 농장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노동을 강제
- 응답자의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생활, 이 중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의 가건물에서 생활 (농산물 재배 분야 67.0%)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동거(F-1)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도 가건물 생활
- 숙소는 농장 안의 외딴 곳에 위치하고, 내부가 좁고, 분리된 공간이 별로 없으며, 위생상태와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음
- 남성 고용주·관리자와 같은 숙소에서 사는 경우가 많음
- 방(침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주로부터 상시적으로 감독·통제 당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숙소 생활
- 전반적으로 농산물 재배 분야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함

I. 연구 배경 및 방법
II. 노동 및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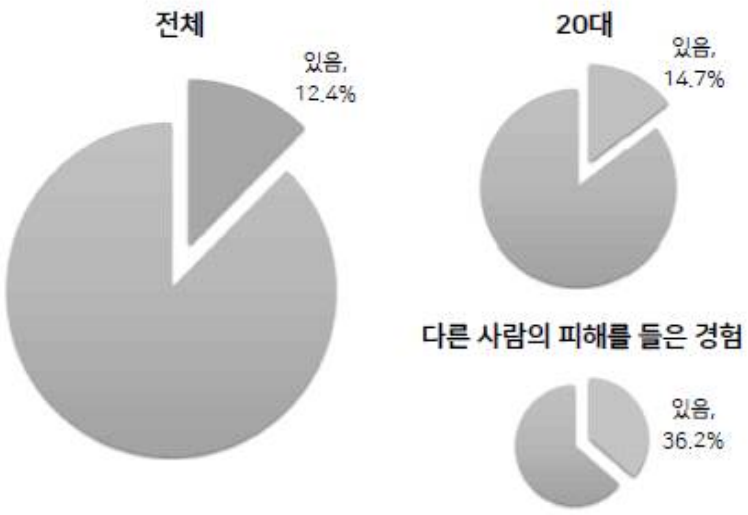
III. 성폭력 경험 분석

IV. 제도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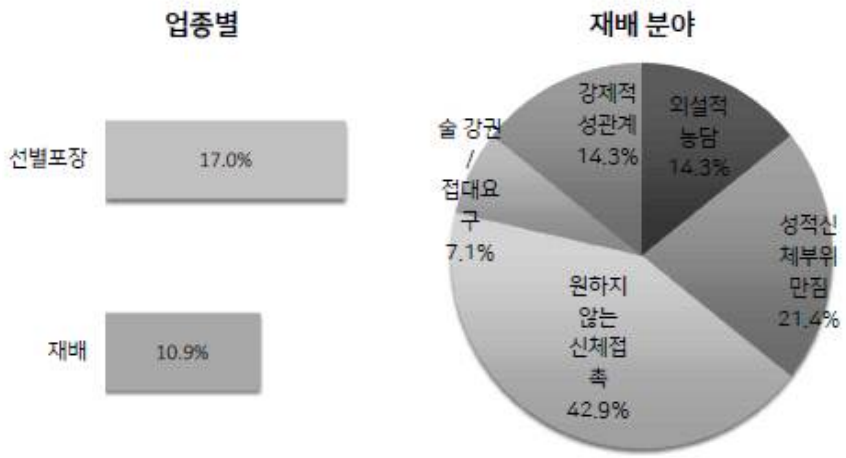
조사 대상 성폭력 피해 유형

- 원하지 않는데 외설적인 이야기나 불쾌한 성적 농담을 함
-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줌
-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함
- 데이트를 하자고 강요함(전화, 문자 등)
- 거절을 하는데도 성관계를 하자고 회유함
-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손잡기, 얼굴만지기, 어깨 감싸 안기, 안마, 애무, 입맞춤, 포옹, 껴안기 등)을 하거나, 나에게 하라고 강요함
-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성적 신체부위를 만짐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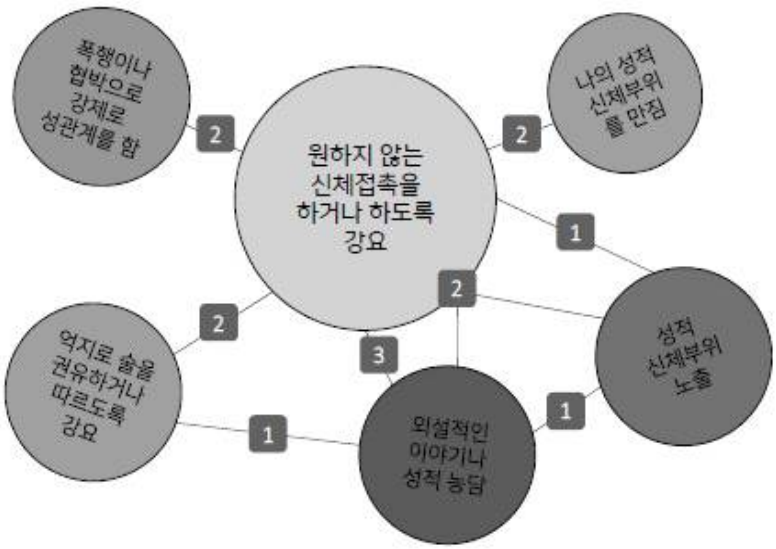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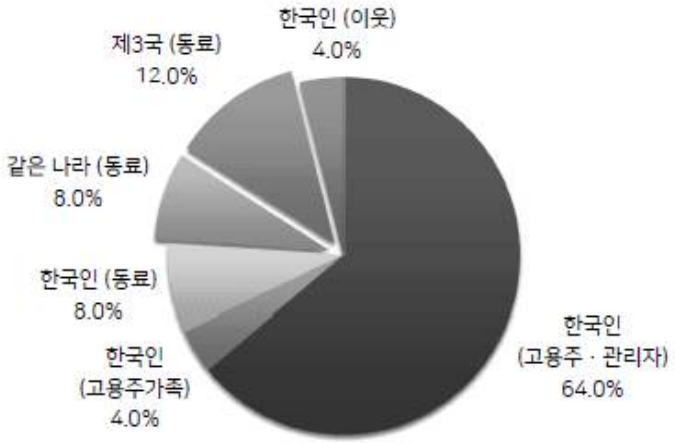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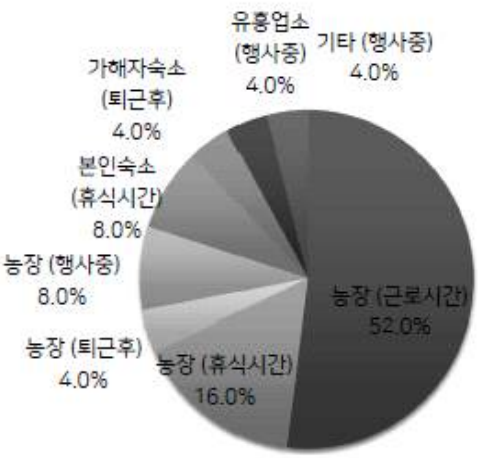
성폭력 중복 피해 유형



가해자의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 장소 및 시간



한국인 고용주, 관리자의 위협 내용



성폭력 피해 경험

어깨를 껴안거나 포옹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옷이나 바지를 당겨서 들여다봐요… 옷을 몇 개 입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사장님 정말 어이없어요. 전에도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사례2)

낮에도 우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자주 옆에 와서 이것저것 말을 하면서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사장님이 항상 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섭고 너무 불편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례5)

기숙사가 여자 2명밖에 없는데, 어떤 날에는 밤 10시 반이나 11시에도 사장님이 제 방 앞에 와서 기숙사 문을 탕탕 때리고, 어떤 날은 제 방에 와서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사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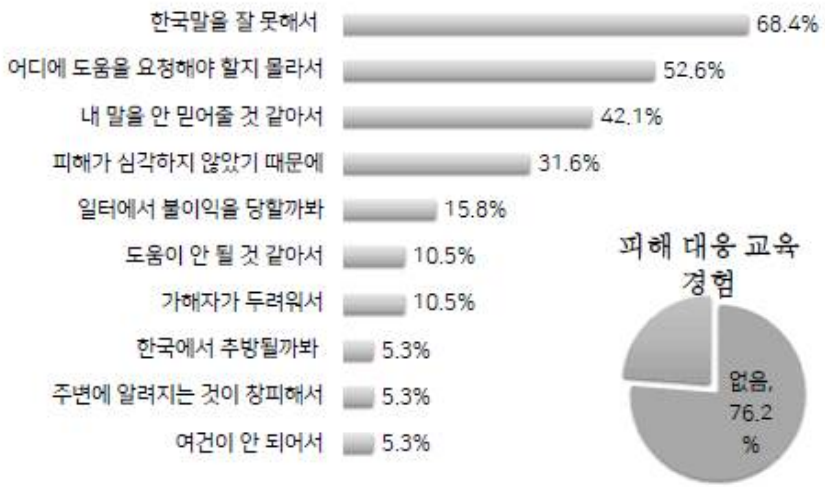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경험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안으려고 그런다든가, 하우스 내에서 자위를 한대요. 이 여성 혼자 있을 때, 자위행위를 하다가 쫓아와가지고 손목을 잡고 자기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사례6)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방에 와가지고 나 한번 안아줘, 뽀뽀해줘, 주물러줘… 한번은 체류 자격 연장을 하러 사장하고 단둘이서 트럭을 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다 오는 길에… 모텔 앞에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저기 한 번 들어가자, 한 번만 자고 가자. (사례7)

폭력 3번, 추행 3번, 강간 1-2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하는 도중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가해자도 말하면 너희 나라로 보내버린다든지 그런 흔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당하시면서도 소리를 못 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게 알려지면 나는 정말 가야되는가보다,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니깐… (사례8)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성폭력 피해 대응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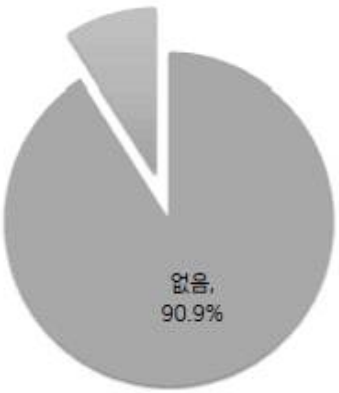
주로 한 달에 이틀 일요일에 쉬는데, 그 일요일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픽업해서 뭐… 옵내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구조… 교통수단을 알지도 못하고, 버스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오고, 농장은 알지만 농장 밖으로는 어디로 가면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사례9)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말도 모르고 경찰서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 안 했어요… 경찰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신고 방법도 잘 몰라요. (사례5)

이 여성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동 상담하시는 분한테도 성폭력 피해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남자분이어서?) 네. (사례7)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하는 거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고… 아무리 그런 문제와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받으면서 1년 정도 지나면 퇴직금도 받고 사업장도 좀…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례9)

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험



그분이 "참고 일을 해라. 사장님이 이직을 안 해 주면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아직도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그러니까 참고 일을 해라"고 했어요. (사례4)

상담사 언니가 저한테 "농업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토요일만 쉴 수 없고 토요일에 일이 있으면 본인이 꼭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담사 언니한테 "근로계약서를 보면 2주일에 하루 쉬고, 일을 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어요?"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사례1)

피해자 지원하러 고용센터에 두 번 따라가 봤는데, 두 번 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편람 몇 페이지 보세요, 이야기해줘야 될 정도. (활동가)

기관 외에 도움 요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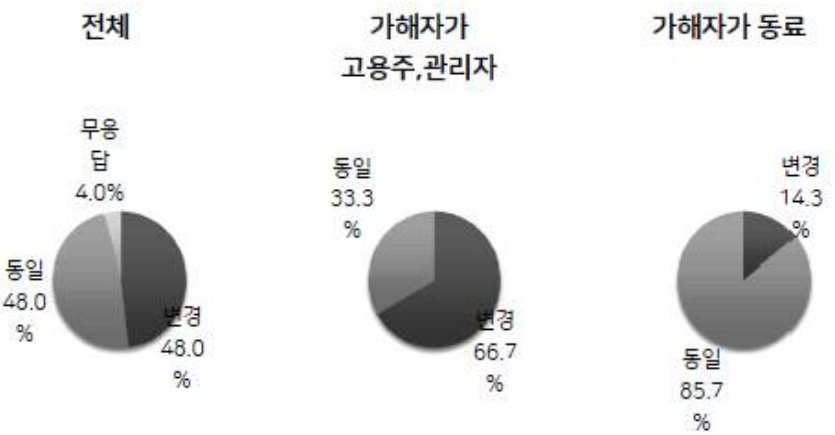


성폭력이 시작된 지 1년쯤 지나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교회에 가서 하루 자게 된 거예요. 자면서, 한국에서 별일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농장을 벗어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사례9)

페이스북으로 캄보디아어를 하는 한국인들 전화번호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입소문으로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거죠. (활동가)

한국에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한국사람이 제 사촌동생과 친한 사이이고 그 분이 제 동생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례4)

가해자 유형별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업장 이동 경험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업장 변경 신청 및 허가 여부



8번 정도 변경 요청했는데, '3년 후에 캄보디아 가라'고 했어요, 퇴사 처리 안 해준대요. (사례2)

사장님한테 사업장 이동 부탁했는데, 사장님이 너희들 초청할 때 돈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사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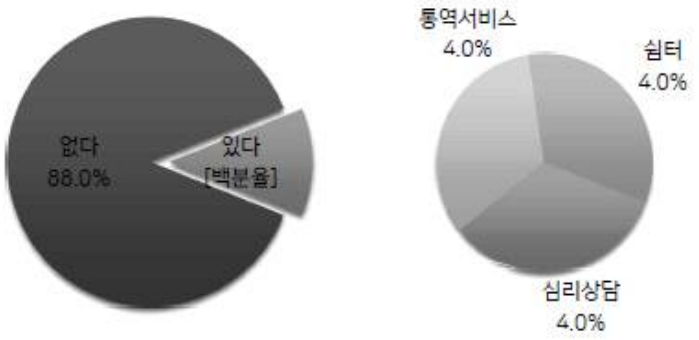
사장님보고 사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인은 안 해주고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다른 사업장 가고 싶으면 불법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사례1)

사업장 이동 경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분들 돌아갔어요. 그러면?)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활동가)

사장님이 "나는 사인을 해줄 수 없다. 만약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으면 미등록자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 후에 통역사 언니가 사무실에 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해주라고 계속 부탁했고, 만약에 사장님이 이직을 안 해 주면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얼마 후에, 사장님이 본인의 잘못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이직을 해주는 대신에, 제가 일을 했는데도 1개월 월급을 받지 않고 나갔어요… 제 통장으로 110만원을 입금 받았지만 사장님이 바로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가서 제 월급을 가져 갔어요. 저는 그 돈도 못봤어요. (사례4)

성폭력 피해 여성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한계

- 의사소통의 어려움

증언을 하는데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필리핀 여성이 따갈로그어를 하는데, 법원에서 필리핀 사람은 다 영어 하는 줄 알고 영어 통역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영어에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통역인이 옆에서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라고 묻는데 통역인이 통역을 안 해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주여성 통역은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기본적 통역조차 안 되는 분이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잘 하는 분들 위주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밤에 애가 있거나 차가 없거나 거리가 멀면 못 오니까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한계

• 지원체계 간 연계의 한계

경찰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이주여성 지원 기관으로 연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하게 해 주든가. 의외로 안 해요.

만약에 여성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에는 통역 인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전화해서 의사와 약속을 정해야 되고 누가 통역이 따라가야 되고 그걸 할 단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주]여성은 모니터링을 못해요. 그걸 모니터링 같이 해 줄 단위가 필요해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한계

• 법률지원의 미흡

외국 국적자 아동 빼놓고 변호사가 있던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주여성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묻는 거지, 국선변호사가 있고, 무료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죠.

I. 연구 배경 및 방법
II. 노동 및 주거환경
III. 성폭력 경험 분석

IV. 제도 개선 과제

제도 개선 과제

- 농업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 장시간 근로, 적은 휴일, 휴게시간 미준수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농축산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9시간/일, 234시간/월, 주 1회 이상의 정기휴일 권장
  - 유럽연합 '근로시간에 관한 입법지침'
    법정근로시간 준수 규정

제도 개선 과제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보장
  - 외국인고용법 표준근로계약서: 숙박시설 제공 여부, 비용의 부담 여부만 표기
  - 캐나다 계절농업노동자 숙소 점검 기준
    - 침실 및 주방 외부의 연기감지기
    - 주방의 소화기
    - 변기 주변의 세면 장치
    - 변기, 샤워기가 문이나 커튼으로 차단, 내부에서 잠글 수 있을 것
    - 세면 공간, 수면 공간이 다른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을 것
    - 식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 결과
    - 비상시 쉽게 대피 가능할 것

제도 개선 과제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보장
  - 미국 일시적 노동자 숙소 기준
    - 요리, 생활, 수면 공간은 1인당 9.29㎡ 이상. 음식을 보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 화장실은 침실 문에서 61m 이내에 있을 것. 옥외 화장실은 침실, 식당, 주방에서 30.5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모든 목욕통, 샤워룸, 세탁실에 배수 시설이 제공되어 물을 버리고 청소할 수 있어야 함.
    - 목욕과 세탁을 위한 온수와 냉수 공급
    - 추운 날씨에 21.1℃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제도 개선 과제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보 제공 미비
  - 캘리포니아 주 농업 분야 성희롱 관련 교육 확대 법 개정(2016)
    - 농장 노동 계약자 지원자 필기시험에 성희롱 내용 포함
    - 관리직 노동자, 연 2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야 함
    - 관리직 외 노동자, 채용 시, 그리고 2년에 1회 이상 성희롱 판단, 예방 및 보고와 관련된 교육 받아야 함
    - 농장 노동 계약자 자격 관련 교육(9시간) 중 성희롱 예방 교육이 1시간 이상 배정되어야 함

제도 개선 과제

-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
  - '사용자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송 등으로 최종 판단 시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즉시 안 되는 문제
  - 타 기관의 조사. 판단 등이 있어야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타 기관의 조사. 판단 결과를 토대로 처리하고 있어 성폭력 입증 실패 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

제도 개선 과제

- 이주여성에게 차별 없는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보장
  - 고용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내 성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강화
  - 성폭력방지법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설립 근거 도입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 보호시설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통합 운영 규정 정비
  - '합법 체류자'로 입소 자격 제한 규제 철폐

제도 개선 과제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권의 보장
  - 통역, 번역인 양성 및 관리 제도 정비
  - 유럽연합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
    - 형사절차에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당사국은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하여야 함.
    - 적어도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 피해자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및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당사국은 소관 기관이 피해자가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역, 번역이 없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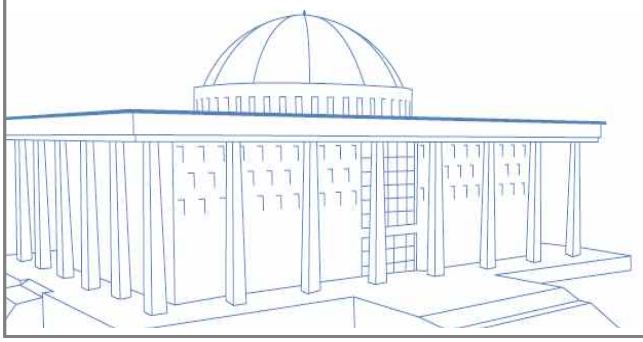
제도 개선 과제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권의 보장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보장
  -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의 제공, 모국어로 된 서면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장애 성인 이주민도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에 포함

토론 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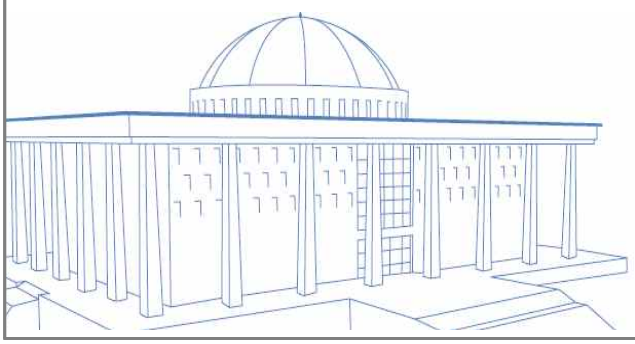
김선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토론 2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최 창 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 7개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 및 위기지원 상담(13개 언어), 긴급피난시설 운영 및 의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다누리콜센터의 상담실적은 '13년 89,887건, '14년 110,516건, ' 15년 116,0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상담내용 144,616건(1통화로 여러 건 상담하는 경우 포함) 중 폭력피해 상담은 17,951건으로 12.5%를 차지함

○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2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그룹홈 2개소,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평균 보호인원은 '13년 277명, ' 14년 291명, '15년 29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의료비, 간병비, 돌봄비,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 시 소요되는 통역비는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신청인이 우선 부담 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하여 실시한다.

○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외국인 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각 해바라기센터에 보급하였다. 동 가이드북에는 외국인 피해자 이해 및 지원을 위한 배경 정보, 지원 관련 주요 현황, 지원 과정별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해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및 사례분석’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필요사항**

○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곳은 고용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인데 해당 센터에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가 없어서 전담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전담창구 개설이 어렵다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내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연계를 위한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체계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누리콜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모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보호시설’은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경우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 시 통역비를 원칙적으로는 사후지원하되 피해자가 자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선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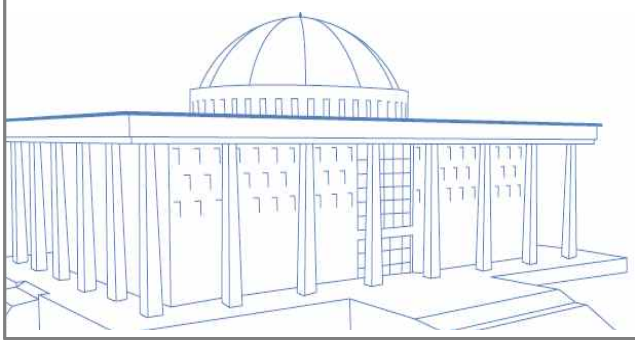
○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및 서비스 지원 절차 개선과 더불어 이주

여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토론 3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피해 경험자 지원 사례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피해 지원의 한계

강 성 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사회의 성범죄 현황은 급증추세에 있다. 2010년에 2만3백여건에서 2015년에는 3만6백여건으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핵심은 성폭력은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표하는 폭력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과 청소년,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피해 경험을 얘기하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30.8%(이병렬,2013) 전후로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강도 높은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어렵고, 사업장의 지리적 조건, 입국 후 초기 경우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자유롭지 못한 고용관계로 인한 실직 우려, 보복우려, 수치심 등 복합적인 이유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들의 거주환경이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성폭력 범죄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다고 해도 현행의 제도적 지원은 이러한 조

건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하는 시스템으로 강화되고 있어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체류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종종 받는다. 물론 농업노동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지만 대부분 초기 개입보다는 경찰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초기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성폭력 피해를 특정해서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질문을 반복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심리적으로 불편해하고 신뢰나 라포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경찰진술을 끝난 상황이라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진술해야하고 시간이나 장소 등을 특정할 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해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뢰성을 잃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진술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된 상황을 파악하고 성폭력 정황에 대해 구체화시켜야 하지만 통역을 통한 상담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언어의 제약은 피해상황을 입증하는데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분리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이탈 문제나 경제활동 단절이라는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는 지원단체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이탈을 받아주지 않는다. 고용관계는 사업주에 의한 퇴직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대부분 기대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의한 강제퇴직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성폭력 신고한 것으로만 받아주지 않고, 성폭력처리에 대한 경찰서의 확인 공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아니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검찰 조사 결과 혹은 재판결과에 의해서 사업장 변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체류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조차도 성폭력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보면 가해자의 회유나 이주노동자에 의한 다양한 정보로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성폭력피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진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특히 가해자가 대가를 주겠다고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체류문제 등을 가지고 위협하는 방식에 노출되는데 이런 상황이 피해 증거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환경의 문제가 성폭력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현장을 빠져나오는 것도 고용주에 의존해야한다. 그리고 지원기관을 만나게 되더라고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해서 추후에 방문하게 되면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주변인을 참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직장동료들은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때문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피해자는 철저하게 혼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상담센터는 쉼터와 상담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기관이다. 이것은 다른 위기상황에 놓인 사례를 지원할 때도 매우 유용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매우 더욱 효과적이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사업장 분리가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며, 피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도 꼼꼼하게 대응해야한다. 예를 들어 피해사실에 대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정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통역지원은 변경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이나 검사조사에서도 통역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희소언어는 이런 지원이 자체가 어렵다. 가급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통역인력풀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해당 대사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역지원은 얼마나 검증된 통역인력이 가능한 것인가도 있으나 통역비용도 수시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권리행사에서 통역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역원의 자질 검증이 되지 않아 중요한 피해자 진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통역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을 할 때 경찰서마다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 조사의 스케줄 등을 미리 연락하고 맞추도록 해야하지만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조사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인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지원할 때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통역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피해 정황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어려울 때도 많다.

특히 피해정황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주변인과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할 때가 있지만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상황을 넘어서 파악되는 정보는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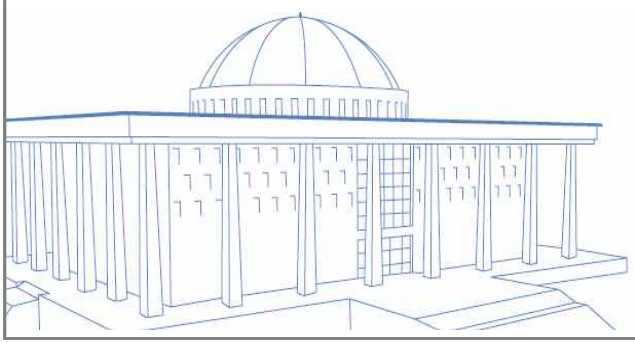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지역의 다누리콜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주여성쉼터나 기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와 보다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여성의 피해 사례는 통역뿐만 아니라 체류문제나 노동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상담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상담센터와 같이 쉼터와 연동되면서 지원이 가능한 이주여성 통합상담소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토론 4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함의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의 함의

김 현 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본 실태조사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상황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노동권 보호의 제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실태조사의 상황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은 다음과 같다.

1. 고용허가제의 한국인 고용주과 외국인 고용인간의 과도한 권력불균형의 문제

고용허가제는 한국인 고용주의 선택과 '선호'를 가장 관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직종별 성별 선택성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좋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조업체는 남성을 선호한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5인 이하 사업장이나 농업, 돌봄 노동 분야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농업분야는 고용주가 '준사법적 권력'을 혹은 탈법적 권력을 휘두를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삶의 습관이나 지역사회의 상호 보호주의적 문화경향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의 시장 불예측성이나 저생산성 등의 오래된 위기 등은 농업 분야 고용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기간동안 이들의 노동 및 일상적 삶의 건강한 재생산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인식보다는 고용주가 '주인'이라는 낡은 인식하에 성, 인종, 국적, 나이 등에 기반을 둔 '우월적 지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문에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명명하고 이에 기반을 두는 조치를 구체화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범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체험, 정보 및 소문이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요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실태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나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용주의 가해 처벌, 고용허가제 정책 및 실행 모든 면에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및 정신적, 육체적 피해 부분에 대한 국가와 가해자 부담의 원칙 등을 포함하여 확장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의 일상성, 강도, 지속성의 문제

농업 노동자에게 성폭력은 작업장, 주거지, 회식자리 등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24시간 일어난다는 점은 기존의 성희롱, 성폭력의 작업장, 직장 내 성폭력 등에 주목해왔던 여성인권원 지원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생산, 재생산 및 노동, 휴식을 망라하여 전면적 형태의 성폭력을 고발하고 저항하며 ‘생존’할 수 있는 피해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규정’할 수 있는 범위도 없고,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특정 사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주여성의 삶 자체가 위험과 거래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은 일터와 집 모두에서 착취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노동력으로 환원되고, 높은 임대료를 덮어씌울 쉬운 희생양으로 상상된다. 또한 이주 여성이 머무는 집은 탈법, 착취, 성폭력을 수용하는 불온한 공간이 되고 있다. 즉, 성폭력과 성적거래가 전면화 되고 있는 농업노동자의 한국 내 체류 실태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평가와 개선을 요청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동료 남성노동자와의 공간적 분리와 안전한 주거시설 마련이 일단 시급하다. 최근 건축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농촌표준주택의 보급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농촌의 이주자들을 위해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창고 등을 개조하여 일종의 표준주택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일터에서 분리되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도 있고, 성폭력의 공포로부터도 안전한 진짜 집의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런 집은 농촌이라는 공간에 함께 머무는 사업주, 공무원, 이주자,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한국의 농촌의 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기여하는 존재들이란 점을 인식한다.

종 합 토 론

발행일 ▌ 2016. 12. 14.
발행처 ▌ 김삼화의원실, 정춘숙의원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